##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거창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 분 | | 우리 자치 단체 |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 배점 | 지표의 의미 |
|---|---|---|---|---|---|
| 합 계 | | 76.14 | 81.61 | 104 | |
| 분석항목 |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9.00 | 11.48 | 15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
| |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 13.00 | 11.48 | 2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 |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5.00 | 4.68 |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11.00 | 12.10 | 10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
| | 경상적 경비 비율 | 5.00 | 4.96 |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 | 일몰제 적용률 | 10.00 | 9.43 | 15 |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
| | 채권 관리 적정성 | 10.00 | 13.82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3.14 | 13.14 | 15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 | 가점 | 0.00 | 0.52 | 4 |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 경상남도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2001. 3. 15.(조례 제1616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거창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5년말 조성액 | '16년도 운용현황 | | | '16년말 조성액 | '17년 운용계획 | | | 비 고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수입 | 지출 | 증감 | |
| 49 | 18 | 3 | 15 | 65 | 15 | 3 | 12 | |

## Ⅱ. 분석결과

###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사업비 집행실적 | | | 사업기간 | 사업형태 | 비 고 |
|---|---|---|---|---|---|---|
| | 최초계획 | 집행계획 | 비율 | | | |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 3 | 3 | 100% | 2016.1.1. ~ 12.31. | 보조사업 | |

○ 분석 결과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재원조성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의존하고 있어 운용에 따른 기금 재원이 적고 기금의 안전성도 낮은 소규모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워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적정 기금이 조성되어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군민 영양 사업에 투자 할 경우 식품위생개선에 기여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15년도 | | | '16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3 | 3 | 100 | 3 | 3 | 10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위반업소가 적어 기금 확보가 어려우므로 2010년 업무보고 후 지출을 자제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 자산 100백만원이 확보될 때 까지는 보조사업만 추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달성도 |
|---|---|---|---|
| '15년 | <음식문화개선사업><br>· 복합찬기 지원<br>2500개/44개소 = 3,500천원<br>· 위원회 운영수당 = 420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br>· 복합찬기 지원<br>2500개/44개소 = 3,500천원<br>※ 집행사항이 없어<br>서면심의함 | 100% |
| '16년 | <음식문화개선사업><br>· 복합찬기 지원<br>1,875개/42개소 = 3,000천원<br>· 위원회 운영수당 = 420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br>· 복합찬기 지원<br>1,875개/42개소 = 3,000천원<br>※ 집행사항이 없어<br>서면심의함 | 100%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비 고 |
|---|---|---|---|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은 도 기금 지원으로 모범음식점을 통해 간소한 상차림 음식문화조성,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 확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음식문화개선에 기여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 고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14년 | 없음 | |
| | '15년 | 없음 | |
| | '16년 | 없음 | |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없음 | |
| 기 타 | | 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식품진흥기금은 대부분의 수입이 과징금 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의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이 식품 위생업소 위주의 사업임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17년 사업비 | 존 치 필 요 성 | 불가피성 정도 |
|---|---|---|---|
| 음식문화개선사업 | 3 | 신축적 집행, 적립성 | 상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 업 명 | 금 액(천원) | 비 고 |
|---|---|---|---|
| 해당 기금 | 없음 | | |
|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 없음 | | |
| 타 기금 | 없음 |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과징금 납부 대상이 식품위생업소로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목적과 재원 조달방법의 연계성은 높음.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 자산이 100백만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보조사업만 시행하며, 100백만원 확보 후 업소시설개선사업 추진과 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기금 귀속 비율 중 시·군·구 비율을 상향토록 법령 개정 건의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구 분 | | '14년 | | '15년 | | '16년 | |
|---|---|---|---|---|---|---|---|
| 수 입 | 합 계 | 46 | % | 52 | % | 68 | %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3 | 7 | 3 | 6 | 3 | 4 |
| | 차입금 | | |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42 | 91 | 43 | 82 | 49 | 72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 | 2 | 1 | 2 | 1 | 2 |
| | 기타수입 | | | 5 | 10 | 15 | 22 |
| 지 출 | 합 계 | 46 | % | 52 | % | 68 | % |
| | 비융자성사업비 | 3 | 7 | 3 | 6 | 3 | 4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43 | 93 | 49 | 94 | 65 | 96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경상남도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연도 : 2005년
- 설치 및 조성 목적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5년말 조성액 | '16년도 운용현황 | | | '16년말 조성액 | '17년 운용계획 | | | 비 고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수입 | 지출 | 증감 | |
| 6,647 | 126 | 189 | △63 | 6,584 | 110 | 240 | △130 | |

## Ⅱ. 분석결과

### 1. 총 평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족기반 마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군 출연금 및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50억원 적립이후 발생된 이자로 201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6,584백만원을 적립함.

○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융자함으로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15년도 | | | '16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240 | 162 | 67.5 | 320 | 189 | 59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달성도 |
|---|---|---|---|
| ‘15년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 3% 지원(240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 3% 지원(162백만원) | 67.5% |
| ‘16년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 3% 지원(320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 3% 지원(189백만원) | 59%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50억원 적립 만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2013년 하반기부터 융자금 이자보전 년 3% 지원, 2013년부터 2016까지 70개 업체 8,890백만원 융자 실행, 융자금 이차보전금 454백만원 지급.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비 고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br>· 지방자치법 제142조<br>·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br>·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 | ·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br>· 중소기업 개발자금 지원<br>· 중소기업 시설설비 자금 지원 등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3년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사업 실시(70개 업체 88억원 지원)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 고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14년 | 해당없음 | |
| | ‘15년 | 해당없음 | |
| | ‘16년 | 해당없음 | |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기 타 | |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자금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회생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금설치 목적이 있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17년 사업비 | 존 치 필 요 성 | 불가피성 정도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240 | ▶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의 안정성 필요 | 중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 업 명 | 금 액(천원) | 비 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로 인하여 군의 출연금은 지양하고, 기금운영 수입(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목적과 재원 조달방법의 연계성은 높음.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경기하락과 기업운영 애로에 따른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 기업수요와 신청내역에 따라 연 2회 사업시행(상・하반기)

○ 기금 적립 중단 및 금리하락에 따른 기 적립금 사용

- 2022년 기금존치 기한 만료 후 일반회계 예산 편성으로 지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구 분 | | '14년 | | '15년 | | '16년 | |
|---|---|---|---|---|---|---|---|
| 수 입 | 합 계 | 6,471 | 100% | 68,09 | 100% | 6,774 | 100% |
| | 전입금 | 500 | 9 | 300 | 4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5,809 | 88 | 6,369 | 94 | 6,647.7 | 98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62 | 3 | 140 | 2 | 126.8 | 2 |
| | 기타수입 | | | | | | |
| 지 출 | 합 계 | 6,471 | 100% | 6,809 | 100% | 6,774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102 | 1.6 | 162 | 2 | 189.7 | 3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6,369 | 98.4 | 6,647 | 98 | 6,584.7 | 97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경상남도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저소득자녀장학기금
  - · 1992. 2. 13 조례 제1258호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기금
  - · 1982. 5. 4 조례 제753호 거창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 · 1988. 5. 1 조례 제970호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 2005. 6. 20 조례 제1749호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 노인복지기금
  - · 1999.01.15 조례 제1496호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여성정책발전기금
  - · 2002.11.22 조례 제1652호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 **2012. 8. 6 조례 제2093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정으로 통합 관리**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5년말 조성액 | | '16년도 운용현황 | | | '16년말 조성액 | '17년 운용계획 | | | 비 고 |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수입 | 지출 | 증감 | |
| 사 회 복 지 기 금 | | 218 | 128 | 39 | 4,009 | 109 | 182 | △48 | |
| | 저소득자녀장학계정 | 9 | 14 | △5 | 510 | 8 | 10 | △2 | |
| | 기초생활보장계정 | 146 | 45 | 101 | 1,228 | 30 | 95 | △65 | |
| | 생활안정계정 | 21 | 28 | △7 | 143 | 34 | 40 | △6 | |
| | 노인복지계정 | 21 | 21 | 0 | 1,049 | 17 | 17 | 0 | |
| | 여성정책발전계정 | 21 | 20 | 1 | 1,079 | 20 | 20 | - | |

## Ⅱ. 분석결과

### 1. 총 평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학업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 28백만원을 융자하였고 저소득주민자녀 29명, 14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자수입 및 기타 사업비 등으로 약146백만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등 45백만원을 융자해 준 실적이 있음.

○ 노인복지기금사업은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군 출연금으로 1,000백만원을 조성하여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사)대한노인회거창군지회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임.

○ 주요사업으로는 2015년까지 관내 경로당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3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2016년까지 경상남도 실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경비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음.

○ 노인복지기금사업은 신축적인 예산집행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로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여성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15년도 | | | '16년도 | |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사 회 복 지 기 금 | | 206 | 63 | 30.6% | 201 | 128 | 63.7% |
| | 저소득자녀장학계정 | 15 | 14 | 93.3% | 14 | 14 | 100% |
| | 기초생활보장계정 | 90 | 0 | 0% | 95 | 45 | 47.4% |
| | 생 활 안 정 계 정 | 50 | 3 | 6% | 50 | 28 | 56% |
| | 노 인 복 지 계 정 | 26 | 25 | 96.1% | 21 | 21 | 100% |
| | 여성정책발전계정 | 25 | 21 | 84% | 21 | 20 | 95.2%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15년 | ○ 저소득자녀장학기금사업<br>- 15백만원, 29명<br>○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br>- 90백만원, 2개사업<br>○ 생활안정기금사업<br>- 50백만원, 5명<br>○ 노인복지기금사업<br>- 미등록경로당(16백만원)/14개소)<br>- 경남실버체육대회(10백만원/120명)<br>○ 여성정책발전기금사업<br>- 25백만원 | ○ 저소득자녀장학기금사업<br>- 14백만원, 29명<br>○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br>- 사업실적 없음<br>○ 생활안정기금사업<br>- 3백만원, 1명<br>○ 노인복지기금사업<br>- 미등록경로당(15백만원)/13개소)<br>- 경남실버체육대회(10백만원/120명)<br>○ 여성정책발전기금사업<br>- 3개단체 21백만원 | 93.3%<br>0%<br>13%<br>96%<br>84% |
| '16년 | ○ 저소득자녀장학기금사업<br>- 14백만원, 29명<br>○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br>- 95백만원, 2개사업<br>○ 생활안정기금사업<br>- 50백만원, 5명<br>○ 노인복지기금사업<br>- 한궁보급사업(13백만원)/40개소)<br>- 경남실버체육대회(80백만원/130명)<br>○ 여성정책발전기금사업<br>- 21백만원 | ○ 저소득자녀장학기금사업<br>- 14백만원, 29명<br>○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br>- 45백만원, 2개사업<br>○ 생활안정기금사업<br>- 28백만원, 4명<br>○ 노인복지기금사업<br>- 한궁보급사업(13백만원)/40개소)<br>- 경남실버체육대회(80백만원/130명)<br>○ 여성정책발전기금사업<br>- 5개단체 20백만원 | 100%<br>47%<br>68%<br>100%<br>95%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가정의 자녀 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부담의 경감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켰음

·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등 45백만원을 융자해 줌으로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음.

· 경로당 40개소에 325천원 상당의 한궁 세트를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을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노인의 치매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경남실버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영위에 기여하였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비 고 |
|---|---|---|---|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 거창군 저소득 주민자녀 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 |
|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 자활사업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융자)으로 생활안정 도모 | |
| | 노인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 |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 | 여성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 거창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 고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14년 |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금 회수대책 수립 | |
| | '15년 | 미등록경로당 운영비지원 중지 | |
| | '16년 |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금 회수대책 수립 | |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기 타 | | 해당없음 |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17년 사업비 | 존 치 필 요 성 | 불가피성 정도 |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사업 | 14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존치 필요 | 중 |
| 기초생활보장 기금 사업 | 45 | 자활사업 지원 및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관리 등을 위해 존치 필요 | 상 |
| 생활안정기금 사업 | 50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및 농협 생업자금 대여 등 기금의 대체사업 운영 중으로 존치 여부 논의 필요<br>※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호(2015. 8.13.)와 관련, 유사중복사업 정비 권고 | 하 |
| 한궁보급사업 | 13 | 예산의 신축적 집행 및 예산확보의 안정성 확보 | 중 |
| 경남실버체육대회 참가지원사업 | 8 | 예산의 신축적 집행 및 예산확보의 안정성 확보 | 중 |
| 여성발전지원사업 | 20 | 여성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치 필요 | 중 |

##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 업 명 | 금 액(천원) | 비 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재원 조성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향후 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자수입과 자활사업 매출 적립금으로 계속적인 재원조성이 가능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등으로 기금 관리를 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비융자성사업비 형태로 주로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사업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며, 운영자금은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최근 금리하락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임.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융자사업 이외 자활참여자 및 자활사업 수행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

○ 경남실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의 신축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금조성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구 분 | | '14년 | | '15년 | | '16년 | |
|---|---|---|---|---|---|---|---|
| 수 입 | 합 계 | 4,005 | % | 3,982 | % | 4,154 | %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55 | 1.4 | 24 | 0.6 | 59 | 1.4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3,821 | 95.4 | 3,860 | 96.9 | 3,919 | 94.3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04 | 2.6 | 95 | 2.4 | 74 | 1.8 |
| | 기타수입 | 25 | 0.6 | 3 | 0.1 | 102 | 2.5 |
| 지 출 | 합 계 | 4,005 | % | 3,982 | % | 4,154 | % |
| | 비융자성사업비 | 84 | 2.1 | 63 | | 55 | 1.3 |
| | 융자성사업비 | 61 | 1.5 | - | 1.6 | 68 | 1.7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3,860 | 96.4 | 3,919 | 98.4 | 4,026 | 96.9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5 | 0.1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경상남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설치연도 : 1998. 8. 18(조례 제1481호)
  - ◦개 정 1999. 9. 11(조례 제1528호 부칙)
  - ◦전부개정 2005. 1. 15(조례 제1734호)
  - ◦일부개정 2008. 1. 14(조례 제1878호)
  - ◦일부개정 2008. 9. 23(조례 제1902호)
  - ◦일부개정 2012. 3. 26(조례 제2072호)
  - ◦일부개정 2016. 7. 20(조례 제2328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5년말 조성액 | '16년도 운용현황 | | | '16년말 조성액 | '17년 운용계획 | | | 비 고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수입 | 지출 | 증감 | |
| 824 | 512 | 452 | 60 | 884 | 465 | 371 | 94 | |

## Ⅱ. 분석결과

### 1. 총 평

○ 2016년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884백만원이며, 재난예방사업을 위하여 448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세부사업으로는 가조면 도리 '둥동소하천 정비 사업' 83,968천원, '기상관측 데이

터 로거 교체(2개)' 9,900천원, '재난마을 경보방송시스템 구매 설치(위천면 25개소)' 105,400천원, 수승대 내 '인명구조장비 보관 창고 설치' 12,759천원, 가조면 일원에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및 신설' 118,962천원, 웅양·고제·위천·남하면 4개소에 '최신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구매' 71,162천원, 북상면 3개소에 '자동우량경보 노후시설 교체' 44,095천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점검 업무 추진 여비' 1,28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29천원을 반납하였음.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사업과 여름철 장마 및 태풍 이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재난마을 경보방송시스템 구축,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및 신설, 인명구조장비 보관창고 설치를 통해 긴급상황 대처,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였음.

○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하는 하며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통해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해오고 있음.

##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15년도 | | | '16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539 | 530 | 98.3% | 473 | 448 | 94.7%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달성도 |
|---|---|---|---|
| ‘15년 | ○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120백만원)<br>○ 하천 물놀이 위험지역 정비(30백만원)<br>○ 학생수상안전 체험훈련(36백만원)<br>○ 인명구조 장비 보관 창고 설치(5백만원)<br>○ 외탐저수지 위험시설 정비사업(100백만원)<br>○ 농어촌경보시설 확대 설치(160백만원)<br>○ 노후경보시설 전면 교체(70백만원)<br>○ 저수지 수위표 설치사업(18백만원) | ○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br>- 북상면 3개소 (120백만원)<br>○ 하천 물놀이 위험지역 정비<br>- 북상면 창선리 1개소 (30백만원)<br>○ 학생수상안전 체험훈련<br>- 3,329명 실시 (36백만원)<br>○ 인명구조 장비 보관 창고 설치<br>- 수승대 1개소 (5백만원)<br>○ 외탐저수지 위험시설 정비사업<br>- 신원면 1개소 (98백만원)<br>○ 농어촌경보시설 확대 설치<br>- 면사무소 옥상 4개소 (159백만원)<br>○ 노후경보시설 전면 교체<br>- 군청 옥상 1개소 (64백만원)<br>○ 저수지 수위표 설치사업<br>- 수위표 9개 (18백만원) | 98% |
| ‘16년 | ○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및 신설(200백만원)<br>○ 최신 재난경보시스템 구축(160백만원)<br>○ 인명구조장비 보관창고 설치(13백만원)<br>○ 둥동소하천 정비공사(100백만원) | ○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및 신설(191백만원)<br>- 노후시설 교체 : 북상면 3개소<br>- 보강 및 신설 : 가조면 일원<br>- 기상관측 테이터로거 교체 : 2개<br>○ 최신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160백만원)<br>- 경보방송시스템 구매 : 위천면 25개소<br>-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구매 : 4개소 (웅양·고제·위천·남하면)<br>○ 인명구조장비 보관창고 설치<br>- 수승대 1개소 (13백만원)<br>○ 둥동소하천 정비공사<br>- 가조면 1개소 (84백만원) | 95%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동우량 경보 노후시설 교체와 보강 및 신설'**로 집중호우시 사전안내 및 대피방송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인명구조 보관창고 설치'**로 인명구조장비 보관과 관리 효율화 및 긴급구조능력 확충 환경개선, 가조면 도리 **'둥동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근 농경지 및 주택 홍수 피해 예방, **'재난마을 경보방송시스템'**과 **'최신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설치'**로 산불, 태풍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원활한 홍보방송 실시여건 개선으로 사전 재난대비 예방활동 강화와 24시간 경보 발령 태세 확립을 통해 자연재해 사전예방 등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 효과에 기여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비 고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br>○ 거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328호 | ○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br>○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br>○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br>○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br>○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br>○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br>○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등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등에 사용함으로써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 고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14년 | 해당없음 | |
| | '15년 | 해당없음 | |
| | '16년 | 해당없음 | |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기 타 |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목적만으로 충분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17년 사업비 | 존 치 필 요 성 | 불가피성 정도 |
|---|---|---|---|
| 학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 100 | 안정적이며 충분한 재원확보, 신축적 집행 | 상 |
|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 200 | 안정적이며 충분한 재원확보, 신축적 집행 | 상 |
| 최신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 160 | 안정적이며 충분한 재원확보, 신축적 집행 | 상 |
| 합 계 | 460 | |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 업 명 | 금 액(천원) | 비 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인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적정함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일반회계 예산의 경직성을 감안, 응급재해복구사업 등 시급하고 신축적인 재난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신축적이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운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구 분 | | '14년 | | '15년 | | '16년 | |
|---|---|---|---|---|---|---|---|
| 수 입 | 합 계 | 1,481 | % | 1,354 | % | 1,336 | % |
| | 전입금 | 280 | 19 | 200 | 15 | 237 | 18 |
| | 보조금 | 365 | 25 | 299 | 22 | 260 | 19 |
| | 차입금 | | |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814 | 55 | 834 | 62 | 824 | 62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22 | 1 | 21 | 1 | 15 | 1 |
| | 기타수입 | | | | | | |
| 지 출 | 합 계 | 1,481 | % | 1,352 | % | 1,336 | % |
| | 비융자성사업비 | 610 | 41 | 530 | 39 | 448 | 33.5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834 | 56 | 822 | 61 | 884 | 66.2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37 | 3 | 0.4 | 0 | 4 | 0.3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경상남도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영조례
- 설치연도 : 1996. 10. 14.
- 설치 및 조성 목적 : 아림예술제 사업과 활동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5년말 조성액 | '16년도 운용현황 | | | '16년말 조성액 | '17년 운용계획 | | | 비 고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수입 | 지출 | 증감 | |
| 500 | 8 | 8 | - | 500 | 8 | 8 | - | |

## Ⅱ. 분석결과

### 1. 총 평

○ 2010년 이후부터는 군 출연금 없이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사업수행하고 있으며,

○ 2016년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으로 투명하게 기금 집행 하였으며 제46회 아림예술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

###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15년도 | | | '16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13 | 13 | 100 | 8 | 8 | 10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달성도 |
|---|---|---|---|
| ‘15년 | ○사진촬영제작 1식 1,600<br>○영상촬영제작 1식 1,500<br>○초청공연비 3,000<br>○행사지원비 4,380<br>○인건비 4명 640<br>○급량비 980<br>○사무관리(물품임차 등) 900 | ○사진촬영제작 1식 1,600<br>○영상촬영제작 1식 1,500<br>○초청공연비 3,000<br>○행사지원비 4,462<br>○인건비 4명 640<br>○급량비 980<br>○사무관리(물품임차 등) 418 | 99% |
| ‘16년 | ○사진촬영제작 1식 1,600<br>○영상촬영제작 1식 1,500<br>○상장제작 1식 400<br>○인건비 4명 800<br>○보관료 1식(대북) 3,300<br>○사무관리(물품임차 등) 400 | ○사진촬영제작 1식 1,600<br>○영상촬영제작 1식 1,500<br>○상장제작 1식 400<br>○인건비 4명 800<br>○보관료 1식(대북) 3,300<br>○사무관리(물품임차 등) 400 | 100%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6년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으로 투명하게 기금 집행 하였으며 제46회 아림예술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비 고 |
|---|---|---|---|
|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영조례 | - 아림예술제 사업과 활동지원 | -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br>- 기타 아림예술제위원회 사업 지원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집행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 고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14년 | 해당없음 | |
| | '15년 | 해당없음 | |
| | '16년 | 해당없음 | |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기 타 | | 해당없음 |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예치를 통한 적립기금으로 사업 추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17년 사업비 | 존 치 필 요 성 | 불가피성 정도 |
|---|---|---|---|
| 제46회 아림예술제 개최지원 | 8 | 필요함 | 상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 업 명 | 금 액(천원) | 비 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아림예술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예치 및 이자 운용을 통해 사업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음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운용 및 집행 투명성 강화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구 분 | | '14년 | | '15년 | | '16년 | |
|---|---|---|---|---|---|---|---|
| 수 입 | 합 계 | 62 | 100% | 61 | 100% | 58 | 100%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50 | 81% | 50 | 82% | 50 | 86%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2 | 19% | 11 | 18% | 8 | 14% |
| | 기타수입 | | | | | | |
| 지 출 | 합 계 | 58 | 100% | 58 | 100% | 58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50 | 86% | 50 | 86% | 50 | 86%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8 | 14% | 8 | 14% | 8 | 14%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경상남도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연도 : 2010. 3. 29(조례 제1967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충당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5년말 조성액 | '16년도 운용현황 | | | '16년말 조성액 | '17년 운용계획 | | | 비 고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수입 | 지출 | 증감 | |
| 208 | 29 | 2 | 27 | 235 | 24 | 4 | 20 | |

## Ⅱ. 분석결과

### 1. 총 평

○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기금을 적립하여 2015년말 2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됨

○ 2016년에는 조성된 기금으로 불법현수막 제작,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지원금으로 일부를 지출하였음

○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및 경관조성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지원할 계획임

##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15년도 | | | '16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 | - | - | 4.7 | 2 | 43.6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달성도 |
|---|---|---|---|
| '15년 | - | - | - |
| '16년 | ○ 불법광고물예방 현수막제작<br>- 70천원*2회*20개소 =2,800천원<br>○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br>- 50천원19명*2회 = 1,900천원 | ○ 불법광고물예방 현수막제작<br>- 1회 20개소 = 1,100천원 지출<br>○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지원<br>- 1회 19명 = 950천원 지출 | 43.6%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5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인 2억원을 달성하여 2016년에는 불법광고물 예방 현수막 제작(1,100천원) 및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지원금(95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조성 등을 위하여 활용 계획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 고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br>- 거창군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재원조성 |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조성<br>·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br>·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br>·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5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인 2억원을 달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에 불법광고물 예방 현수막 제작(1,100천원) 및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지원금(950천원)

을 처음으로 집행하였으며, 향후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조성 등을 위하여 활용 계획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 고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14년 | 해당없음 | |
| | '15년 | 해당없음 | |
| | '16년 | 해당없음 | |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기 타 |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17년 사업비 | 존 치 필 요 성 | 불가피성 정도 |
|---|---|---|---|
| ① 불법광고물예방 현수막 제작 | 2.8 | 기금 설치목적인 광고물 정비 및 경관조성,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존치가 필요함. | 중 |
| ②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지원 | 1.9 | | |
| 합 계 | 4.7 | |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 업 명 | 금 액(천원) | 비 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방법 :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이자), 옥외광고 업무관련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5년말까지 전입금 및 예금이자 등으로 기금조성 목표액 2억원 이상이 적립되어, 2016년부터 적립된 기금으로 일부사업을 시행중이나, 향후 기금 수익금 규모를 감안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광고물 정비, 경관조성 등의 사업에 투입·운영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구 분 | | '14년 | | '15년 | | '16년 | |
|---|---|---|---|---|---|---|---|
| 수 입 | 합 계 | 136 | % | 208 | % | 237 | % |
| | 전입금 | 70 | 51 | 70 | 33 | 0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65 | 48 | 136.8 | 66 | 208 | 88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 | 1 | 1.2 | 1 | 4.5 | 2 |
| | 기타수입 | | | | | 24.5 | 10 |
| 지 출 | 합 계 | 136 | % | 208 | % | 237 | %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2 | 1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36 | 100 | 208 | 100 | 235 | 99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경상남도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 설치연도 : ‘95. 04. 02. (조례 제1358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5년말 조성액 | ‘16년도 운용현황 | | | ‘16년말 조성액 | ‘17년 운용계획 | | | 비 고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수입 | 지출 | 증감 | |
| 1,086 | 22 | 20 | 2 | 1,089 | 18 | 20 | △2 | |

## Ⅱ. 분석결과

### 1. 총 평

○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 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 2016년에는 2015년말 조성액 1,086,678천원을 재예치하여 22,640천원의 이자수입으로 1,109,318천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적립금 중 20,000천원을 우수선수 육성사업(역도부 및 유도부)에 지원하고 나머지 1,089,016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하였음.

○ 2017년에는 2016년 예치금과 이자수입의 조성액 중 20,000천원을 지난해와 같이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코자 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15년도 | | | '16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1,107 | 1,107 | 100 | 1,109 | 1,109 | 10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달성도 |
|---|---|---|---|
| '15년 | ○ 기금 적립<br>○ 우수선수 육성사업 지원 | ○ 기금 적립(1,086,854천원)<br>○ 역도부 우수선수 육성사업 지원(20,000천원) | 100% |
| '16년 | ○ 기금 적립<br>○ 우수선수 육성사업 지원 | ○ 기금 적립(1,089,016천원)<br>○ 역도부 및 유도부 우수선수 육성사업 지원(20,000천원) | 100%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 고 |
|---|---|---|---|---|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br>- 우수선수 육성 사업<br>- 군민체육대회 개최<br>- 도민체육대회 참가<br>-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및 관리·운용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대로 사업추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 고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14년 | 해당없음 | |
| | '15년 | 해당없음 | |
| | '16년 | 해당없음 | |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기 타 |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17년 사업비 | 존 치 필 요 성 | 불가피성 정도 |
|---|---|---|---|
|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 지원 | 20 | 일반회계의 부서별 보조금 편성액 한도 설정으로 유소년 및 학교체육 등 우수선수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신축적 집행 | 상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 업 명 | 금 액(천원) | 비 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 180 | |
| |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 256 | |
| | 전국체전 참가선수 육성 지원 | 9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작성

- 합　　계 : 1,109,318,529원
- 예치금회수 : 1,086,678,089원
- 이자　수입 :　　22,640,440원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7. 3. 14일 정기예금 만기 시 재예치 적립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 적립금 중 20,000천원을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 지원으로 지출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구 분 | | '14년 | | '15년 | | '16년 | |
|---|---|---|---|---|---|---|---|
| 수 입 | 합 계 | 1,093,640 | % | 1,106,854 | % | 1,109,318 | % |
| | 전입금 | 300,000 | 28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55,856 | 5 | 1,093,640 | 99 | 1,086,678 | 98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37,784 | 3 | 13,214 | 1 | 22,640 | 2 |
| | 기타수입 | 700,000 | 64 | | | | |
| 지 출 | 합 계 | 1,093,640 | % | 1,106,854 | % | 1,109,318 | %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093,640 | 100 | 1,086,854 | 98 | 1,089,318 | 98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20,000 | 2 | 20,000 | 2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